## 사업방법서 별지

- 1. 보험의 종류 : 특종-상해/상해
- 2. 보험상품의 명칭 : KB개인상해보험
- 3. 보험의 목적

피보험자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, 별도의 보험목적 보장 시 해당 개별 특약에 보험의 목적을 명기한다.

- 4.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관한 사항
  - 가. 보험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- 나.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.
  - 다. 가입연령 : 제한없음. 단,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.
- 5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## 7. 기타

- 가. 보험료의 할인 · 할증에 관한 사항
  - 이 보험의 「보험료 및 해약화급금 산출방법서」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- 나. 보험료 납입 최고(독촉) 기간 :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다. 보험료의 반환 :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라. 보험계약대출 :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.
- 마. 보험 종목의 변경 :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아니한다.
- 바.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, 보험만기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다.
- 사. 회사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한 다
- 아. 암(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) 관련 특별약관의 면책기간은 90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으며, 피보험자가 만15세 미만인 경우 면책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.
- 자. 자전거 관련 특별약관 중 전국민 및 자전거 이용자로 구분된 위험률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.
  - 전국민 위험률 : 지방자치단체가 전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및 단체의 구성원을

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피보험자가 자전거 이용자 및 자전거 미이용자로 구성된 계약

- 자전거 이용자 위험률 : 피보험자가 자전거 이용자로만 구성된 계약
- 차.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경우 2012년 4월 1일부터 신규계약 판매중지(단, 이전기간 동안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포함된 계약은 예외로 함)
- 카.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(종업원)의 법정상속 인 이외의 자(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)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.
- 타.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
  - (1)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  - (2)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- 1.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- 2.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  - (3) 기타
  - 1.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 - 2.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